

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등록 변경신고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5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신고인	대표자	영업소명
	등록번호	

등록사항	변경 전	변경 후

변경사유

분실사유
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3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○○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

첨부서류	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원본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1.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
2.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 47조제3항제2의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처리절차

